## 미원 학술상 규정

시행: 2022. 12. 01.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 미원학술상(이하 "학술상" 이라 한다)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시상대상) 학술상은 경희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전공 학술 분야에서 탁원한 연구업적을 내어 학문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.

제 3 조 (학술상의 종류) 학술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- 1. 대상
- 2. 우수상
- 3. 장려상

제 4 조 (학술상의 결정) 학술상의 수상자 및 종류는 학술상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함)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제 5 조 (운영위원회) ① 학술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연구처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.
- ④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-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 6 조 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학술상의 기본 운영계획
- 2. 수상자의 수와 포상액
- 3. 학술상 심사위원회 추천
- 4. 학술상 심사기준
- 5. 학술상 심사 결과
- 6. 기타 학술상 시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

제 7 조 (회의와 의결)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 8 조 (심사위원의 위촉) ① 학술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전공영역별로 3인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.

- ② 심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부교수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관련 전공 분야에서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.
- ③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외부 인사 중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 9 조 (심사의뢰)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연구업적을 기한을 정하여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.

②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심사를 행하며 심사과정에 지득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0조 (평결) ①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심의하여 수상 후보자를 결정하여 총장에게 추천된다. ②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심의한 후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연구업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"수상자 없음"을 의결할 수 있다.

제11조 (심사대상) 학술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국내외에서 발표된 학술논문 또는 저서를 그 심사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학위논문, 편저, 번역, 자료집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12조 (구비서류) ① 학술상의 수상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전공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
- ② 제 1항의 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연구처(산학협력처)를 경유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추천서(소정양식) 1부
- 2. 주요 경력 및 이력서(소정양식) 1부
- 3. 주요 저작물 목록(소정양식) 1부
- 4. 심사대상 저작물 개요(소정양식) 1부
- 5. 심사용 추천대상 저작물 5부

제13조 (추천기간) 학술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 기한은 매년 3월 10일로 한다.

제14조 (시상일) 학술상의 수여는 경희대학교 개교기념일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5조 (시상) 학술상의 시상은 상패(상장) 및 부상으로 한다.

제16조 (보칙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